

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	--

提案年月日：1988. 3.

提案者：內務委員長

1. 代案의 提案理由

地方自治의 健全한 育성과 民主行政制度의 定着·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政治·經濟·社會 및 行政與件에 알맞는 새로운 地方自治制度를 定着시키고자 地方自治法을 全面 改正하려는 것임.

2. 代案의 提案經緯

政府, 한국국민당에서 各各 提案한 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과 統一民主黨, 平和民主黨, 新民主共和黨의 地方自治法 改正試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1988年 1月 27日 第 138回 國會(臨時會) 第 2次 內務委員會의 議決로 構成된 地方自治關係法 審査小委員會에서 1988年 1月 29日 부터 7次에 걸쳐 小委員會를 開催하여 審査한 結果 1988年 3月 7日 第 140回 國會(臨時會) 第 1次 內務委員會에서 이미 提出된 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을 各各 廢棄하고 委員會案(代案)을 提案기로 한 것임.

3. 代案의 主要骨子

- 가. 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하고 特別市·直轄市·道와 市·郡·區(特別市·直轄市の 區에 한함)로 大別함 (案 第2條 및 第3條).
- 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를 包括적으로 例示하고,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事務配分基準을 정함(案 第8條 내지 第10條).
- 다.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者는 住民이 되며,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權利와 義務를 가지도록 함 (案 第12條 내지 第14條).
- 라. 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條例와 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함(案 第15條 및 第16條).
- 마. 選舉日 현재 20才이상인 國民으로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住民은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地方選舉의 選舉權을 갖도록 함 (案 第22條).
- 바. 地方選舉의 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90日이상 계속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로서 25才이상인 者는 地方議會議員

의, 30才이상인 者는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의, 35才이상인 者는 市·道知事의 被選舉權을 갖도록 함 (案 第23條).

사. 地方議會議員의 定數는 行政區域을 基準으로 하되, 特別市·直轄市·道는 25人 내지 70人, 市와 自治區는 15人 내지 25人, 郡은 10人 내지 20人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함 (案 第27條 및 第28條).

아. 地方議會議員은 任期 4年의 名譽職으로 하되 會期中에는 日費와 旅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함 (案 第31條 및 第32條).

자. 地方議會의 權限은 條例의 制定, 豫算의 확정, 決算의 승인, 기타 住民負擔에 관한 사항의 審議·議決權 등으로 함 (案 第35條 내지 第37條).

차. 地方議會의 운영은 定期會를 年1회로 하고, 年間 會議 總日數를 市·道는 70日, 市·郡·自治區에 있어서는 60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案 第38條 및 第41條).

카. 地方議會에는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2種을 두되, 常任委員會는 市·道에 한하여 設置하도록 함 (案 第50條).

- 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舉에 의하여 選出하되, 따로 法律로 정할 때까지는 政府에서 任命함(案 第 86 條 및 附則 第 5 條).
- 파.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는 地方議會 議決事項에 대한 再議要求權 및 先決處分權을 부여하고(案 第 98 條 내지 第 100 條),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地方議會的 違法하거나 현저히 公益을 害하는 議決에 대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案 第 159 條), 地方議會는 行政事務調查權·出席答辯要求權을 갖도록 하여 서로 牽制할 수 있도록 함.
- 하. 地方自治團體에는 法令 및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機關·直屬機關·事業所·出張所 및 合議制行政機關을 둘 수 있도록 함(案 第 101 條 내지 第 107 條).
- 거. 地方自治團體에 課稅權, 使用料·手數料·分擔金の 賦課·徵收權과 豫算에 관한 權限을 부여하고, 그 운영·管理에 관한 節次와 방법을 정함(案 第 113 條 내지 第 135 條).
- 너.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에는 상호 協力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된 業務를 共同處理하기 위한 行政協議會를 구

성하거나 地方自治團體組合을 設立할 수 있도록 함(案 第 139 條 내지 第 154 條).

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公益을 해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1 次로 是正을 명하고, 2 次로 取消·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自治事務에 관하여는 違法事項에 한하도록 함(案 第 157 條).

러. 서울特別市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特例를 둘수 있도록 함(案 第 161 條).

머. 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議會는 市·郡 및 自治區부터 구성하되, 그 地方議會議員의 選舉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 年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市·道議會는 市·郡 및 自治區의 議會가 구성된 날로부터 2 年이내에 구성하도록 함(案 附則 第 2 條).

버.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은 이 法 施行과 동시에 이를 廢止하고,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廢止함(案 附則 第 6 條).

공백

法律 第 號

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

地方自治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地 方 自 治 法

第 1 章 總 綱

第 1 節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關係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며 地方自治의 進전한 발전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2 種으로 한다.

1. 特別市와 直轄市 및 道
2. 市와 郡 및 區

②地方自治團體인 區 (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

市와 直轄市の 管轄區域안의 區에 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第 1 項의 地方自治團體외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直轄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와 郡은 道の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直轄市の 管轄區域안에 둔다.

③特別市 또는 直轄市가 아닌 人口 50 萬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第 2 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④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洞·里(이하 “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수 있다.

⑥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 5 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관할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② 第 1 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第 6 條 (事務所의 所在地) 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의 條例로 정한다.

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3分の2이상
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7條 (市·邑의 設置基準등)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
態를 갖추고 人口 5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郡事務所의 所在地의 面은 人口 2萬
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

③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
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道議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市·邑의 設置에 관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規
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 9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運營管理
 - 다. 傘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
 - 라. 傘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
 - 마. 소속 公務員의 人事·厚生福祉 및 教育
 - 바. 地方稅와 地方稅外收入의 賦課 및 徵收
 - 사. 豫算의 編成·執行 및 會計監査와 財産管理
 - 아. 行政裝備管理, 行政電算化 및 行政管理改善
 - 자. 公有財産管理

차. 戶籍 및 住民登錄管理

카. 地方自治團體가 필요로 하는 각종 調査 및 統計의 작성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가.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

나.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및 管理

다. 生活困窮者의 보호 및 지원

라. 老人·兒童·心身障礙者·靑少年 및 婦女의 보호와
福祉增進

마. 保健診療機關의 設置·운영

바.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豫防과 防疫

사.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운영·管理

아.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

자. 清掃, 汚物의 收去 및 處理

차.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운영

3. 農林·商工業등 産業振興에 관한 事務

가. 小溜池·泫등 農業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나. 農林·畜·水産物의 生産 및 流通支援

다. 農業資材의 管理

- 라. 複合營農의 운영·指導
 - 마. 農外所得事業의 육성·指導
 - 바. 農家副業의 獎勵
 - 사. 公有林管理
 - 아. 小規模畜産開發 및 酪農振興事業
 - 자. 家畜傳染病 豫防
 - 차. 地域産業의 육성·지원
 - 카. 消費者保護 및 貯蓄의 獎勵
 - 타. 中小企業 육성
 - 파. 地域特化産業의 開發과 육성·지원
 - 하. 優秀土產品 開發과 觀光民藝品 開發
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 設置·管理에 관한 事務
- 가. 地域開發事業
 - 나. 地方 土木·建設事業의 施行
 - 다. 都市計劃事業의 施行
 - 라. 地方道, 市郡道の 新設·改修 및 유지
 - 마. 住居生活環境改善의 獎勵 및 지원
 - 바.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
 - 사. 地域내의 自然保護活動

- 아. 地方河川·準用河川 및 小河川의 管理
 - 자. 上水道·下水道の 設置 및 管理
 - 차. 簡易給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 카. 道立·郡立 및 都市公園, 綠地 등 觀光·休養施設의
設置 및 管理
 - 타. 地方軌道事業의 經營
 - 파. 駐車場·交通標識 등 交通便宜施設의 設置 및 管理
 - 하. 災害對策의 수립 및 執行
 - 거. 地域經濟의 육성 및 管理
5. 教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 가. 幼兒園·幼稚園·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
에 準하는 各種學校의 設置·운영·指導
 - 나. 圖書館·運動場·廣場·體育館·博物館·公演場·美
術館·音樂堂 등 公共教育·體育·文化施設의 設置 및
管理
 - 다. 地方文化財의 지정·보존 및 管理
 - 라. 地方文化·藝術의 振興

마. 地方文化・藝術團體의 육성

6.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

가. 地域 및 職場民防衛組織(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編成과 운영 및 指導・監督

나. 火災豫防 및 消防

第 10 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① 第 9 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第 9 條第 2 項第 1 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通된 事務로 한다.

1. 市・道

가. 行政處理 結果가 2 個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

나. 市・道單位로 동일한 基準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性質의 事務

다. 地域的 特色을 살리면서 市・道單位로 統一性を 유지할 필요가 있는 事務

라. 國家와 市・郡 및 自治區間의 連絡・調整등의 事務

마. 市·郡 및 自治區가 獨自的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事務

바. 2個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가 共同으로 設置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規模의 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한 事務

2. 市·郡 및 自治區

第1號에서 市·道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事務를 제외한 事務. 다만, 人口 50萬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道가 처리하는 事務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配分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競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事務가 서로 競爭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第 11 條(國家事務의 處理制限)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外交, 國防, 司法, 國稅등 國家의 存立에 필요한 事務
2. 物價政策, 金融政策, 輸出入政策등 全國的으로 統一的 처리를 요하는 事務
3. 農林·畜產·水產物 및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出入등 全國的 規模의 事務
4. 國家綜合經濟開發計劃, 直轄河川, 國有林, 國土綜合開發計劃, 指定港灣, 高速國道·一般國道, 國立公園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5. 勤勞基準, 測量單位등 全國的으로 基準의 統一 및 調整을 요하는 事務
6. 郵便, 鐵道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7.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檢査·試驗·研究, 航空管理, 氣象行政, 原子力開發등 地方自治團體의 技術 및 財政能力

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事務

第 2 章 住 民

第 12 條(住民의 資格)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者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이 된다.

第 13 條(住民의 權利) ①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地方自治團體의 財産과 公共施設을 이용할 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均등하게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國民인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
團體에서 施行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이하 “地方選舉”라 한다)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 14 條(住民의 義務)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分擔하는 義務를 진다.

第 3 章 條例와 規則

第 15 條(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

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 16 條 (規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범위 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17 條 (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8 條 (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地方自治團體가 分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條例 또는 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래 그 地域에 施行되던 條例 또는 規則을 계속 施行할 수 있다.

第 19 條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등) ① 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 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 1 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

는 15 日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移送받은 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第2 項의 期間내에 이유를 붙여 地方議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第3 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붙여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 分の 2 이상의 賛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 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 項과 第5 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條例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 項에 의하여 條例가 확정된 후 또는 第4 項에 의한 確定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된 후 5 日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議會的 議長

이 이를 公布한다.

⑦條例와 規則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 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⑧條例와 規則의 公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0 條 (罰則의 委任) 市·道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3 月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 10 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科料 또는 50 萬원 이하의 過怠料의 罰則을 정할 수 있다.

第 21 條 (보고) 條例나 規則을 制定 또는 改廢하는 경우 條例에 있어서는 地方議會에서 移送된 날로부터 5 日 이내, 規則에 있어서는 公布豫定 15 日전에 市·道知事は 內務部長官에게,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에게 그 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內務部長官은 이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市·道知事は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으로부터 받은 보고중 內務部長官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內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4 章 選 舉

第 22 條(選舉權) 選舉日 현재 20 歲이상인 國民으로서 選舉日 公告日 현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住民은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地方選舉의 選舉權을 가진다.

第 23 條(被選舉權) ① 地方選舉의 選舉權이 있는 者로서 選舉日 현재 25 歲이상인 者는 地方議會議員의 被選舉權을 가진다.

② 地方選舉의 選舉權이 있는 者로서 選舉日 현재 30 歲이상인 자는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의 被選舉權을 가지며, 35 歲이상인 者는 市·道知事의 被選舉權을 가진다.

③ 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立候補하고자 하는 者는 選舉日 현재 계속하여 90 日이상 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어야 한다.

第 24 條(選舉管理機關) 地方選舉의 選舉事務는 選舉管理委員會法에 의한 各級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管理한다.

第 25 條(地方選舉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選舉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 5 章 地 方 議 會

第 1 節 組 織

第 26 條 (議 會 의 設 置) 地 方 自 治 團 體 에 議 會 를 둔 다.

第 27 條 (市 · 道 議 會 의 議 員 定 數) 市 · 道 議 會 의 議 員 定 數 는 그 管 轄 區 域 안 의 市 · 郡 및 自 治 區 마 다 2 人 으 로 하 되, 人 口 30 萬 이 상 인 市 · 郡 및 自 治 區 에 있 어 서 는 30 萬 을 초 과 하 는 때 20 萬 까 지 마 다 1 人 을 더 한 다. 이 경 우 그 基 準 에 의 하 여 산 정 된 議 員 定 數 가 25 人 미 만 이 되 는 때 에 는 그 定 數 를 25 人 으 로 하 고, 70 人 을 초 과 하 는 때 에 는 그 定 數 를 70 人 으 로 한 다.

第 28 條 (市 · 郡 및 自 治 區 議 會 의 議 員 定 數) ① 市 및 自 治 區 議 會 의 議 員 定 數 는 그 管 轄 區 域 안 의 洞 마 다 1 人 으 로 하 되, 人 口 2 萬 을 초 과 하 는 洞 에 있 어 서 는 2 人 으 로 한 다. 이 경 우 그 基 準 에 의 하 여 산 정 된 議 員 定 數 가 15 人 미 만 이 되 는 때 에 는 그 定 數 를 15 人 으 로 하 고, 25 人 을 초 과 하 는 때 에 는 그 定 數 를 25 人 으 로 한 다. 이 條 項 에 있 어 서 의 洞 은 第 4 條 第 5 項 의 規 定 에 의 한 行 政 洞 을 말 한 다.

② 郡議會의 議員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邑·面마다 1人으로 하되, 人口 2萬이상인 邑·面に 있어서는 2萬을 초과하는 때 2萬까지마다 1人을 더한다. 이 경우 그 基準에 의하여 산정된 議員定數가 10人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定數를 10人으로 하고, 20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定數를 20人으로 한다.

第 29 條 (人口의 基準) 第 27 條 및 第 28 條의 人口의 基準은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計에 의한다.

第 30 條 (議員定數의 調整) ① 地方議會의 議員定數는 總選舉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增減하지 못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員定數를 調整한다.

1. 選舉區에 해당하는 區域이 擴張되거나 縮小된 때에는 그 變更된 選舉區에서 選出된 地方議會議員은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喪失하고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하되,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殘任期間동안 在任한다. 이 경우 당해 地方議會議員의 殘任期間동안에는 第 27 條 및 第 28 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

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2. 둘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合하여져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모든 議員은 統合전 殘任期間중 짧은 편의 殘任期間동안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동안에는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議員定數로 한다.
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둘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은 候補者登錄 당시의 選舉區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分割전 殘任期間동안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동안에는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在職 議員數를 議員定數로 한다. 다만, 在職議員數가 第27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舉를 실시한다
4. 市가 直轄市로 된 때에는 종전의 市議會議員과 당해 地域에서 選出된 道議會議員은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각각 喪失하고 直轄市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하되, 종전의 市議會議員의 殘任期間동안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동안에는 第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在職議員數를 議員定數로 한다

5. 邑 또는 面이 市로 된 때에는 市議會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選舉하는 議員의 數는 第 28 條의 規定에 의한 定數로부터 당해 地域에서 이미 選출된 郡議會議員의 數를 뺀 數로 하고, 종전의 郡議會議員은 市議會議員이 된다. 이 경우 종전의 郡議會議員과 새로 選出된 市議會議員은 종전의 郡議會議員의 殘任期間동안 在任한다
6. 自治區 아닌 區가 自治區로 된 때에는 自治區議會를 새로 構成하고 그 議員定數는 第 28 條의 規定에 의한 定數로 한다. 이 경우 새로 選出된 自治區議會議員은 종전의 市議會議員의 殘任期間동안 在任한다

第 2 節 地方議會議員

第 31 條 (議員의 任期) ①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② 第 1 項의 任期는 總選舉에 의한 前任議員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로부터 開始된다. 다만, 天災地變등의 사유로 前任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總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그 當選日로부터 開始된다.

③ 補闕選舉에 의한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當選된 날로부터 開始되어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增員選舉에 의한 議員의 任期는 當選된 날로부터 開始되어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32 條 (議員의 報酬) 地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會期중에 한하여 日費와 旅費를 支給할 수 있으며, 이의 支給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3 條 (兼職등 금지) ①地方議會議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1. 國會議員,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2. 憲法裁判所 裁判官, 各級 選舉管理委員會 委員, 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
3. 國家公務員法 第 2 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 2 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政黨法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 2 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 (韓國銀行을 포함한다) 의 任·職員
5. 第 138 條 또는 地方公企業法 第 2 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任·職員
6.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의 任·職員
7. 政黨法 第 17 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言論人 및 教員

②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産의 讓受人 또는 管理人이 될 수 없다.

第 34 條 (議員의 義務) ①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地方議會議員은 清廉의 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3 節 權 限

第 35 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확정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

地方稅 또는 加入金의 賦課와 徵收

5. 基本財産 또는 積立金의 設置・管理 및 處分
6. 重要財産의 취득・處分
7. 公共施設의 設置・管理 및 處分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外 義務負擔이
나 權利의 포기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사항외에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議會에서 議決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第 36 條 (行政事務調查權) ① 地方議會는 議決로써 그 地方自
治團體의 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調
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을 하거나 書類의 제출
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補助機關의 出席證言이나
意見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調査를 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議員 3分の1이
상의 連署로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發議하여야 한다.

第 37 條 (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① 地方自治

團體의 長 또는 관계 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 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은 條例로 정한다.

第4節 召集과 會期

第38條(定期會) 地方議會的 定期會는 매년 12月1日에 集會한다. 다만,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

第39條(臨時會) ① 總選舉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舉日로부터 25日이내에 召集한다.

② 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の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日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臨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40 條 (附議案件의 公告)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에 附議할 案件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會議중 긴급한 案件을 附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41 條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30日, 臨時會의 會期는 10日이내로 한다.

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期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7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60日을 초과할 수 없다.

第 5 節 議長과 副議長

第 42 條 (議長·副議長의 選舉와 任期) ①地方議會는 議員 중에서 市·道の 경우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市·郡

및 自治區의 경우 議長과 副議長 各 1人을 無記名投票로 選舉하여야 한다.

②議長과 副議長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43 條 (議長의 職務) 地方議會의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會議場내의 秩序를 유지하고 議會의 事務를 監督한다.

第 44 條 (議長의 委員會 出席과 發言) 地方議會의 議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45 條 (副議長の 議長職務代理) 地方議會의 副議長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46 條 (臨時議長)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 47 條 (補闕選舉)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補闕選舉를 실시한다.

②補闕選舉에 의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の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48 條 (議長등 選舉時의 議長職務代行) 第 42 條第 1 項, 第 46 條 또는 第 47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를 實施하

는 경우에 議長의 職務를 수행할 者가 없는 때에는 出席議員중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第 49 條 (議長不信任의 決議) ① 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議會는 不信任을 決議할 수 있다.
- ② 第 1 項의 不信任決議는 在籍議員 4 分の 1 이상의 發議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행한다.
- ③ 第 2 項의 不信任決議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

第 6 節 委 員 會

- 第 50 條 (委員會의 設置) ① 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 ② 委員會는 소관 議案과 請願등을 審査·處理하는 常任委員會와 특정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査·處理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 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常任委員會는 市·道議會에 한하여 設置한다.
- ③ 委員會의 委員은 地方議會에서 選任한다.

第 51 條 (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가 委任한 特정한 案件을 審査한다.

第 52 條 (委員會에서의 傍聽등) ① 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 있다.

② 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 53 條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中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 分の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地方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의 議決이 있거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第 54 條 (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第 7 節 會 議

第 55 條 (議事定足數) ① 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 分の 1 이

상의 出席으로 開議한다.

②會議중 第 1 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 56 條 (議決定足數) ①議事は 이 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 57 條 (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 人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58 條 (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 分の 1 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

②第 1 項의 議案은 草案을 갖추어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59 條 (會期繼續의 原則) 地方議會에 제출된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議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0 條(一事不再議의 原則) 地方議會에서 否決된 議案은 같은 會期中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할 수 없다.

第 61 條(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①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이를 附議할 수 없다. 다만,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중의 期間을 제외한 7 日이내에 議長 또는 在籍議員 3 分の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第 1 項 但書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

第 62 條(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地方議會의 議長이나 議員은 本人 또는 直系尊卑屬과 직접 利害關係가 있는 案件에 관하여는 그 議事に 참여할 수 없다. 다만, 議會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議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63 條(會議規則) 地方議會는 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이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事項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 64 條(會議錄) ①地方議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會議의 進行內容 및 결과와 出席議員의 姓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會議錄에는 議長과 議會에서 選出한 議員 2 人이상이 署名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會議錄의 寫本을 첨부하여 會議의 結果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④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秘密을 요한다고 議長이 인정하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한 事項은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 8 節 請 願

第 65 條(請願書의 제출) ①地方議會에 請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請願書에는 請願者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66 條(請願의 不受理) 裁判에 간섭하거나 法令에 違背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接受하지 아니한다.

第 67 條(請願의 審査·處理)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請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

②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 취지를 說明하여야 한다.

③委員會가 請願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處理결과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 68 條(請願의 移送과 處理보고) ①地方議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1 項의 請願을 處理하고 그 處理결과를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 9 節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

第 69 條(議員의 辭職) 地方議會는 그 議決로 소속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 70 條(議員의 退職) 地方議會의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1.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2.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3. 懲戒에 의하여 除名된 때

第 71 條(議員의 資格審査)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在籍議員 4分の 1 이상의 連署로 議長에게 資格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被審議員은 자기의 資格審査에 관한 會議에 出席하여 辯明은 할 수 있으나 議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

第 72 條(資格喪失議決) ①第 71 條第 1 項의 被審議員에 대한 資格喪失議決은 在籍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被審議員은 第 1 項에 의하여 資格喪失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職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第 73 條(闕員의 통지) 地方議會의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15 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管轄 選舉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 10 節 秩 序

第 74 條(會議의 질서유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發言 또는 행위를 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을 命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命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그 議員에 대하여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을 금지시키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會議를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 75 條(侮辱등 發言의 금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他人을 侮辱하거나 他人의 私生活에 대한 發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侮辱을 당한 議員은 侮辱을 加한 議員에 대하여 地方議會에 그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

第 76 條(發言妨害등의 금지) 地方議會의 議員은 會議중에 暴

力을 행사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 他人의 發言을 방해할 수 없으며,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없이 演壇이나 壇上에 登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77 條(傍聽人에 대한 團束) ①傍聽人은 議案에 대하여 可否를 表明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③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④傍聽人에 대한 團束에 관하여 第 1 項 내지 第 3 項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이를 定한다.

第 11 節 懲 戒

第 78 條(懲戒의 사유) 地方議會는 議員이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第 79 條(懲戒의 요구) ① 地方議會의 議長은 第 78 條의 規定

에 의한懲戒對象議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委員會 또는本會議에 회부한다.

② 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議員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懲戒事由를 기재한 요구서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소관委員會 또는本會議에 회부한다.

第80條(懲戒의 종류 및 議決) ①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日이내의 出席停止
4. 除名

② 除名에는 在籍議員 3分の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81條(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이를 정한다.

第12節 事務機構와 職員

第82條(事務局등의 設置) ① 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

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局을 둘 수 있으며, 事務局에는 事務局長과 職員을 둔다.

②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幹事와 약간 명의 職員을 둘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局長·幹事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第 83 條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②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과 協議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第 84 條 (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등) ①事務局長 또는 幹事は 地方議會의 議長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②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을 適用한다.

第 6 章 執 行 機 關

第 1 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第 1 款 地 位

第 85 條 (地方自治團體의 長) 特別市에 特別市長, 直轄市에 直轄市長, 道에 道知事を 두고, 市에 市長, 郡에 郡守, 自治區에 區廳長을 둔다.

第 86 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23 條第 2 項 및 第 3 項의 被選舉權이 있는 者중에서 選舉한다.

② 第 1 項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方法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 87 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② 第 1 項의 任期는 前任者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로부터 開始된다.

第 88 條 (兼任등의 제한)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을 兼

任할 수 없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在任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관계있는 營利事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 89 條 (地方自治團體의 廢置 · 分合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① 地方自治團體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編入됨으로 인하여 廢止된 때에는 그 廢止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喪失한다.

② 둘이상의 同格의 地方自治團體가 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모두 그 職을 喪失하고 새로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舉한다.

③ 第 2 項의 경우 市 · 郡 및 自治區를 統 · 廢合하는 때에는 市 · 道知事が, 市 · 道를 統 · 廢合하는 때에는 內務部長官이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舉될 때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 중에서 지정한다.

④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둘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設置된 地方自治團體중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가 位置

한 地域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서 殘任期間중 在任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舉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새로 選舉할 때까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가, 市·道知事は 內務部長官이 각각 그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市·自治區 또는 直轄市가 새로 設置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새로 選舉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새로 選舉할 때까지 市長은 道知事가, 區廳長은 特別市長 또는 直轄市長이, 直轄市長은 內務部長官이 각각 그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第 90 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미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 91 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舉)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闕位된 때에는 2月이내에 補闕選舉를 실시하고, 補闕選舉로 當選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殘任期間이 1年미만인 경우에는 補闕選舉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第 2 款 權 限

第 92 條(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第 93 條(國家事務의 委任)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에서 施行하는 國家事務는 法令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行한다.

第 94 條(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를 管理하고 執行한다.

第 95 條(事務의 委任등)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 소속 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 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業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하는 事務가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法令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第 96 條(職員에 대한 任免權 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 職員을 指揮・監督하고 法令과 條例・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免・教育訓練・服務・懲戒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第 97 條(事務引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는 때에는 그 소관事務의 일체를 後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 3 款 地方議會와의 관계

第 98 條(地方議會的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的 議決이 越權 또는 法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議決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 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을 얻은 경우에는 그 議決은 확정된다.

第 99 條(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地方議會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 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 1 項과 같다.

1.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 義務的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2.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 98 條 第 2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00 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地方議會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 地方議會議를 召集할 時間的 여유가 없을 때, 地方議會議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

② 第 1 項에 의한 先決處分은 다음 會期의 地方議會議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2 節 補助機關

第 101 條(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① 特別市와 直轄市에 副市長, 道에 副知事を 두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되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며, 그 職級은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이를 정한다.

③ 市・道の 副市長과 副知事は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市の 副市長과 副郡守 및 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④ 市・道の 副市長과 副知事, 市の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補佐하여 事務를 總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당해 市・道の 副市長과 副知事, 市の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102 條(行政機構) ①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

領令으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이를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內務部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이를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第 3 節 所屬 行政機關

第 104 條 (直屬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
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機關·教育訓練機關·
保健診療機關·試驗研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등을 直
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

②直屬機關을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하고자 할 때에
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
은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

第 105 條 (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 106 條 (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 107 條 (合議制行政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
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令 또

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議制行政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 4 節 下部行政機關

第 108 條(下部行政機關의 長)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 邑에 邑長, 面に 面長, 洞에 洞長을 둔다. 이경우 洞은 第 4 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第 109 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①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

② 邑長·面長·洞長은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이 任命한다.

③ 邑長·面長·洞長의 任用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10 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邑長·面長은 郡守의, 洞長은 市長(區가 없는 市の 市長을 말한다)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

함한다)의 指揮・監督을 받아 소관 國家事務 및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 111 條(下部行政機構)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소관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그 設置에 관하여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이를 정한다.

第 5 節 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第 112 條(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①地方自治團體의 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機關을 둔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 7 章 財 務

第 1 節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第 113 條 (健全財政의 運營)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收支均衡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運營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方財政의 自主성과 건전한 運營을 助長하여 야 하며 國家의 부담을 地方自治團體에 轉嫁하여서는 아 니 된다.

第 114 條 (國家施策의 具現) ①地方自治團體는 國家施策의 具現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施策具現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에 대한 國 庫補助率과 地方費負擔率은 法令으로 정한다.

第 115 條 (地方債務 및 債權管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非常災害 復舊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범위안에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內務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地方債發行計劃을 수립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歲入·歲出豫算외의 부담이 될 債務負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保證債務負擔行爲를 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는 條例 또는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債務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地方自治團體는 法令 또는 條例의 規定에 의하거나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는 債權에 관하여 債務를 免除하거나 그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第 2 節 豫算 및 決算

第 116 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每年 1 月 1 日에 시작하여 그해 12 月 31 日에 종료한다.

第 117 條 (會計의 구분)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이를 設置할 수 있다.

第 118 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開始 40 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30 日전까지 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 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5 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 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1 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第 119 條 (繼續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經費를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總額과 年度別 金額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120 條 (豫備費) ①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

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당하기 위하여 歲入・歲出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하여야 한다.

②豫備費의 支出은 다음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121 條 (追加更正豫算)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122 條 (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地方議會에서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法令이나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令 또는 條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 123 條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등) 地方議會가 새로운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나 案件을 議決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 124 條 (豫算의 移送・告示등)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豫算

案이 議決된 때에는 3日이내에 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의 移送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25 條 (決算)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3月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檢査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日이내에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檢査委員의 選任 및 운영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節 收入 및 支出

第 126 條 (地方稅)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第 127 條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 128 條 (手數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法令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29 條 (分擔金)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産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住民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分擔金を 徵收할 수 있다.

第 130 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 · 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詐欺, 기타 부정한 手段으로써 使用料 · 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 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 2 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 131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31 條 (使用料등의 賦課 · 徵收, 異議申請) ①使用料 · 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方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使用料 · 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③使用料 · 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3 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 日이내에 이를 결정 · 통보하여야 한다.

⑤異議를 신청한 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 4 項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期間이 종료된 날로부터 60 日이내에 또는 그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日이내에 官廳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 3 項 내지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方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 58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32 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 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第 4 節 財產 및 公共施設

第 133 條 (財產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產을

보유하거나, 資金을 積立하거나 또는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財産의 보유, 資金의 積立 및 基金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③第 1 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 134 條 (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 또는 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 135 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 1 項의 公共施設은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第 5 節 補 則

第 136 條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 137 條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 138 條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公團의 設立)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 事務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公團(이하 “地方公社 등”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이 地方公社 등의 設立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公社 등의 設立·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

第 8 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第 1 節 地方自治團體間的 協力和 紛爭調整

第 139 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事務의 共同處理에 관한 요청이나 事務處理에 관한 協議·調整·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 140 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爭調整) 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상호간에 紛爭이 있는 때에는 市·道 또는 그 長이 當事者가 되는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이 當事者가 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が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②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 1 項의 紛爭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當事者의 의견을 들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 141 條(事務의 委託) 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소관 事務의 일부를 다른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에게 委託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委託의 當事者가 市·道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內務部長官 및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와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事務委託에 관한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事務를 委託하는 地方自治團體 및 事務를 委託받는 地方自治團體
2. 委託事務의 내용과 범위
3. 委託事務의 管理와 처리방법
4. 委託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소요되는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5. 기타 事務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事務委託을 變更 또는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과의 協議를 거쳐 이를 告示하고, 第1項의 예에 따라 內務部長官

및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事務가 委託된 경우, 委託된 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관한 條例 또는 規則은 規約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務를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도 適用된다.

第 2 節 行政協議會

第 142 條 (行政協議會의 구성) ①地方自治團體는 둘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관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協議會 (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道가 그 構成員인 경우에는 內務部長官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또는 自治區가 構成員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가 第 1 項의 協議會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間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관계 地方議會의 議決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協議會의 구성을 勸告할 수

있다.

第 143 條 (協議會의 組織) ①協議會는 會長과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會長과 委員은 規約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地方自治 團體의 職員중에서 選任한다.

③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第 144 條 (協議會의 規約) 協議會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協議會의 名稱
2. 協議會를 구성하는 地方自治團體
3. 協議會가 처리하는 事務
4. 協議會의 組織과 會長 및 委員의 選任方法
5. 協議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6. 기타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第 145 條 (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등) 協議會는 그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 地方自治 團體의 長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의견의 開陳 기타 필

요한 協助를 요구할 수 있다.

第 146 條 (協議事項의 調整) ①協議會에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調整要請이 있는 때에는, 市·道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이를 調整할 수 있다. 다만, 關係 市·郡 및 自治區가 2個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②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 1 項의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 147 條 (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①協議會를 구성하는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나 第 14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協議會가 關係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의 名義로 행한 事務의 처리는 關係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행한 것으로 본다.

第 148 條 (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地方自治團體가 協議會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協議會를 廢止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 142 條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3 節 地方自治團體組合

第 149 條 (地方自治團體組合의 設立) ① 2 個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특정 事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規約을 정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市·道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地方自治團體組合 (이하 “組合” 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다만, 組合의 구성원인 市·郡 및 自治區가 2 個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組合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第 150 條 (組合의 組織) ① 組合에는 組合會議과 組合長 및 事務職員을 둔다.

② 組合會議의 委員과 組合長 및 事務職員은 組合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任한다.

③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

은 第 33 條第 1 項 및 第 88 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組合會議의 委員 또는 組合長을 겸할 수 있다.

第 151 條 (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① 組合會議는 組合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重要事務를 審議·議決한다.

② 組合長은 組合을 代表하며 組合의 事務를 統轄한다.

第 152 條 (組合의 規約) 組合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組合의 名稱
2. 組合을 구성하는 地方自治團體
3. 事務所의 位置
4. 組合의 事務
5. 組合會議의 組織 및 委員의 選任方法
6. 執行機關의 組織 및 選任方法
7. 組合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8. 기타 組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第 153 條 (組合의 指導·監督) ① 市·道가 構成員인 組合은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가 構成員인 組合은 1

次로 市·道知事, 2次로 內務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다만, 組合의 構成員인 市·郡 및 自治區가 2個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組合은 內務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②內務部長官은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組合의 設立·解散 또는 規約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 154 條 (組合의 規約變更 및 解散) ①組合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 149 條第 1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組合을 解散한 경우에 그 財産의 處分은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協議에 의한다.

第 9 章 國家의 指導·監督

第 155 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지원)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は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하여 助言 또는 勸告하거나 指導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資料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市·道는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財政支援 또는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

第 156 條 (國家事務 또는 市·道 事務처리의 指導·監督)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에 관하여는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1次로 市·道知事の, 2次로 主務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②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市·道の 事務에 관하여는 市·道知事の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 157 條 (違法·부당한 命令·處分の 是正) ①地方自治團體

의 事務에 관한 그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公益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停止할 수 있다. 이 경우 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분에

있어서는 法令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分の 取消 또는 停止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그 取消 또는 停止處分을 通보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 158 條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書類, 帳簿 또는 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第 159 條 (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①地方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再議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再議의 요구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要求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の2이상의 贊成을 얻는 경우에는 그 議決은 확정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市·道知事は 內務部長官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 再議決된 날로부터 15 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決의 効力은 大法院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第 10 章 서울特別市등 大都市行政의 特例

第 160 條 (自治區의 財源) ①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은 市稅收入중의 一定額을 확보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의 自治區 相互間의 財源을 調整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自治區의 財源調整方法에 대하여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特別市 또는 直轄市の 條例로 정한다.

第 161 條 (特例의 인정) 서울特別市の 地位·組織 및 운영에 있어서는 首都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例를 들 수 있다.

第 162 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88年 5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地方自治團體別 地方議會의 構成時期) ①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議會는 市·郡 및 自治區부터 구성하
되, 그 地方議會議員의 選舉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
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法에 의한 최초의 市·道議會는 市·郡 및 自治區의
議會가 구성된 날로부터 2年 이내에 구성한다.

第3條(최초의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開
始) ①이 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地方議會議員의 任
期는 그 議會의 최초 集會日로부터 開始된다.

②이 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
期는 當選日로부터 開始된다.

第4條(地方議會議決事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地方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이 法중 地方議會의 議決을 요
하는 사항은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
한다.

第 5 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관한 經過措置) ①地

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86 條 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따
로 法律로 정할 때까지 政府에서 任命한다. 이 경우 第 87
條와 第 89 條 내지 第 91 條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 1 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
道知事の 경우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
統領이,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의 경우 市·道知事
의 추천으로 內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다만, 서울特別市에 있어 市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의하여,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추천
으로 國務總理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③ 第 2 項의 市·道知事は 政務職으로, 市長·郡守 및 自治
區의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 級 내지
4 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 6 條 (다른 法律의 廢止등) ①地方自治에 관한臨時措置法은

이 法 施行과 동시에 이를 廢止한다.

②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特別措置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구
성과 동시에 이를 廢止한다.

③ 第 161 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特別市の 地位, 組織 및 운

영에 관한 特例는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第7條(다른 法令과의 關係등) ①이 法 施行후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特別市の地位, 組職 및 운영에 관한 特例는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다.

②이 法の 規定중 서울特別市 및 그 自治區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第101條를 제외하고는 “內務部長官”을 “國務總理”로 보며, 第101條의 “內務部長官”은 “서울特別市長”으로 본다. 다만, 內務部長官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國務總理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의 規定중 市·郡은 市·郡 및 自治區로, 市長·郡守는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으로 본다. 다만, 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의 規定중 서울特別市·釜山市·道는 特別市·直轄市·道로 보며, 서울特別市長·釜山

市長·道知事は 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로 본다. 다만, 그 法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다른 法律중 地方自治에 관하여 이 法과 저촉되는 規定은 이 法에 의한다.

第 8 條 (條例 등의 効力) 이 法 施行 당시의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및 規則은 이 法에 의하여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 9 條 (行政機構)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法令, 條例 또는 規則에 의하여 設置된 行政機構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 10 條 (公務員의 地位) 이 法에 의하여 任命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달라진 公務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 11 條 (名稱變更) 이 法 施行 당시 邑·面의 관할하에 있는 洞은 이 法에 의하여 그 名稱이 變更될 때까지 이를 本則 第 3 條 第 3 項의 “里”로 보며, 이 法 施行日로부터 6 月이 내에 그 名稱을 變更하여야 한다.